

파주시 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원예 시범온실이 매년 증가하는 투자비에 비해 활용성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'98년 수해로 인한 시설물 및 기자재등이 사용불능 상태로 파손됨에 따라 시범온실을 폐쇄하기 위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 [1996. 3. 1] [조례 제142호]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소규모 유형별 재배시설인 원예온실을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택한후 조사, 연구, 비교재배등을 통하여 새기술을 보급하는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설치) ①시설의 명칭은 파주시원예시범온실(이하 “시범온실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②시범온실의 소재지는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1327번지에 둔다

③시범온실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부지면적 : 4,396제곱미터
2. 유리온실 : 1동 660제곱미터
3. 철골 PET 온실 : 1동 660제곱미터
4. 비닐하우스 : 1동 660제곱미터

제 3 조(기능) 시범온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.

1. 경제작물의 시험, 조사, 연구등으로 신품종 육성 및 새기술 보급
2. 첨단자동화시설에 의한 시설개선 유도
3. 시설별 생육상태 비교·연구로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및 보급
4.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

제 4 조(관리 및 운영) ①시범온실의 관리 및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한다.

②운영에 형태 및 방법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.

제 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추1)